## 대법원 2018스724 양육비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7. 18.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에서, <u>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결정을 확정</u>하였음(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결정)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u>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 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u>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u>종</u>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 1. 사안의 개요

- 청구인[여, 1937년생(청구 당시 78세)]과 상대방[남, 1939년생(청구 당시 76세)]은 1971.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경 사건본인(청구 당시 42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다가 1984. 11.경 이혼하였음
- 청구인은 이혼 이후 약 32년이 지난 2016. 6.경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 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미성년인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 2. 소송의 경과

■ 제1심: 청구인 일부 승

-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6,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 협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함
- 워심: 청구인 패
  -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u>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 11.경을 기산점으로</u>
    <u>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u>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청구를 기각함

#### 3. 재항고심의 주요 쟁점: 전원합의 쟁점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①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②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 4. 대법원의 판단

## 가. 다수의견(7인)¹) ➡ 재항고기각

- (1) 법리의 선언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 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sup>1)</sup>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과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음

####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
  -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주로 가지 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 저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고 보는 것은 저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
-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함
  -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확정되도록 한 것은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자녀의 복 리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 부담의 형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지, 협의나 심판 이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가 재산적 권리임을 부정한다는 취지가 아님
  -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 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됨
  -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고 보아야 함

■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김

#### (2) 판례의 변경

■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 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u>대법원</u>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은 이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함

#### (3) 이 사건의 결론

- 청구인의 과거 양육비청구는 <u>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u>,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u>이미 시효로 소멸</u>하 였음
- 원심판단은 이와 같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 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나. 별개의견(1인, 대법관 권영준)

-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협의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협의 또는 심판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입장을 같이하나,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함

# 다. 반대의견(5인,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여 유지되어야 함
- 이러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 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 중 자녀가 성년이 된 때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음

#### 5. 결정의 의의

- 종전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는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거나 심판청구를 하여 <u>적극적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행</u>사한 경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할 권리의 성질상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지만, <u>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u> 때부터는 진행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 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타당성을 적절히 조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음